

공 시 송 달 공 고

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의하여 주민등록증(신규)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6. 12. 21.

속초시 청호동장



- 공 고 기 간 : 2016. 12. 21. ~ 2017. 01. 15.(26일간)
- 공 고 장 소 : 시군구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
- 공시송달 공고내용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		○ 주민등록증(신규) 발급통지서	
2. 당사자	성 명	김 * 진	
	주 소	강원도 속초시 새마을8길	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○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서 발송	
4. 처 분 내 용		○ 발급기간 :2016. 12. 01. ~ 2017. 11. 30.(12개월간)	
5. 법 적 근 거		○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○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	
6. 기 타 (문의처)		제출처	기관명 속초시 청호동주민센터
		주 소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93 (청호동)
		담당자 및 연락처	박진화 (033)639-2647

※ 유의사항

위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